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
----------	----

제안년월일 : 2014년 8월 25일  
발의자 : 남재경·이성희 의원  
찬성자 : 김제리·강구덕·박성숙  
김용석(서초)·이혜경·  
성중기·최호정·김영한·  
김동을 의원(9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또한 도를 넘고 있어 자연경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연경관지구안의 건폐율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자연경관지구안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인 기존 주택의 경우 건폐율을 60%이하로 하고,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경우 건폐율을 50% 이하로 함. (안 제39조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3항 각호 외의 본문 중 “4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단,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토지의 경우 건폐율을 50%이하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p> <p>①~② (생략)</p> <p>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p> <p>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로서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p> <p>2.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미터)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다만,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고 1.8미터 이하 다락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p> <p>③~⑦ (생략)</p>	<p>제39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60퍼센트 -----</p> <p>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단,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토지의 경우 건폐율을 50%이하로 할 수 있다.)</p> <p>2. ----- ----- ----- ----- ----- ----- -----</p> <p>③~⑦ (현행과 같음)</p>